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37호(號) 1935(昭和 10)년 2월 28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08호(號)

1934(昭和 9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39호(號)(내선만대여객연대운송규칙[內鮮滿臺旅客連帶運送規則] 제1조[條]에 의[依]한 연대운송[連帶運送]의 범위[範圍] 및 특수취급사항[特殊取扱事項] 중(中) 1935(昭和 10)년 3월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2월 28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조(條) 별표(別表) (4)철도성(鐵道省: 남조선철도(南朝鮮鐵道) 및 가와사키기선항로 [川崎汽船航路] 경유[經由])의 부문[部]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(4)의2	철도성(鐵道省) (북구주상선항로경유(北九州商船航路經由))	철도국선(鐵道局線) 간(間) 부산(釜山)		
		북구주상선항로(北九州商船航路) 간(間) 하카타(博多) 철도성선(鐵道省線)		